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정립 연구

주신하 · 임승빈*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과학부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A Study for Rural Landscape Planning Criteria

Joo, Shin-Ha · Im, Seung-Bin*

Division of Environment and Life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criteria for Korean rural area. For this, the meaning of rural landscape is defined, and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several legal processes are surveyed, including the deliberation system for natural landscape impacts and the Landscape Law recently legislated.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analysis,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criteria are proposed, which have step-by-step processes; goals and objectives, analysis and estimation for present conditions, basic planning concept, landscape planning for different visual landscape types, landscape designing for visual elements, and practical action plans. Each processes are designed considering the existing legislative framework, so it can be well-matched to current systems. But, because there are few rural landscape plans so far, comparing to the urban landscape plans, the validity of this criteria should be verified in the future studies.

Key words : Korean rural landscape, landscape planning, landscape planning criteria, landscape planning process

I. 서 론

1990년대 들어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준농림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로 자연경관 및 농촌 경관이 훼손이 심각하며, 대규모 간척사업과 댐 건설에 따른 환경적, 경관적 훼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과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보전을 비롯한 국토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러한 결과로 자연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관법이 제정되는 등 실질적인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관과 관련된 현재의 법·제도가 주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일원화되면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

으며, 특히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은 농촌지역은 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자원의 조사 방법, 계획지침, 계획대상, 계획수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농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농촌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농촌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계획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농촌경관계획 수립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경관 개념 정립, 경관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Corresponding author : Joo, Shin-Ha
Tel : 02-970-5619
E-mail : sinhajoo@swu.ac.kr

기존의 농촌계획 및 농촌경관과 관련된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변경되는 경관관련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경관관련 변화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경관계획의 틀을 도출하고, 농촌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진행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원활한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경관계획은 주로 도시지역에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비도시지역의 경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의 수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계획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농촌경관과 경관계획의 개념

1. 농촌경관의 개념

‘경관’은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황기원, 1989). ‘경관(landscape)’이라는 용어는 영어권에서는 16세기말 또는 17세기 초부터 풍경(scenery), 특히 전원풍경(rural scenery)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그 후 전원풍경, 풍경화, 내륙풍경, 자연풍경, 지형, 토지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경관의 유형은 산, 능선 등의 산악경관과 계곡, 구릉지 경관 하천경관, 호수경관, 바다, 섬 등 해안경관 등과 같이 경관의 물리적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인공성의 정도, 대상지의 위치 및 구성요소의 특징 등에 따라 도시경관, 농촌경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도시경관의 개념 및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비

교적 다양하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경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경관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농업, 자연자원,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결과물로서 쾌적함을 비롯해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OECD, 2001), 농촌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경관의 한 가지 형태로 자연, 농업, 인공적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가시적 산물(박동규 외, 2004), 촌락의 입지와 형태, 가옥의 배열, 가옥의 평면 형태, 건축재료, 경지의 형태 등의 모습으로 지각되는 대상(이상문, 1991), 자연, 농업, 인공적 환경 등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시적 산물(송미령, 2006) 등으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관계획의 대상으로서 농촌경관을 다루는 입장이므로 농촌경관의 개념을 농촌의 공간구성요소가 위치하는 일단의 토지와 그에 부속된 모든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생태과정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¹⁾ 즉 농촌경관이란 농촌 취락지경관을 중심으로 경작지와 주변의 자연경관을 포함하고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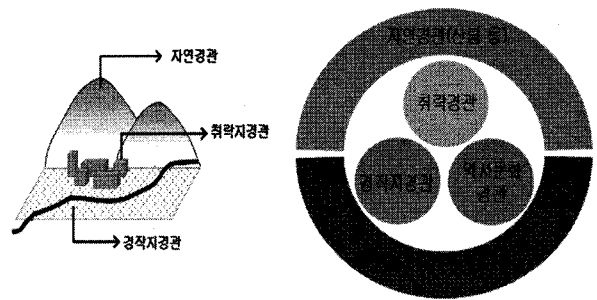


Figure 1 농촌경관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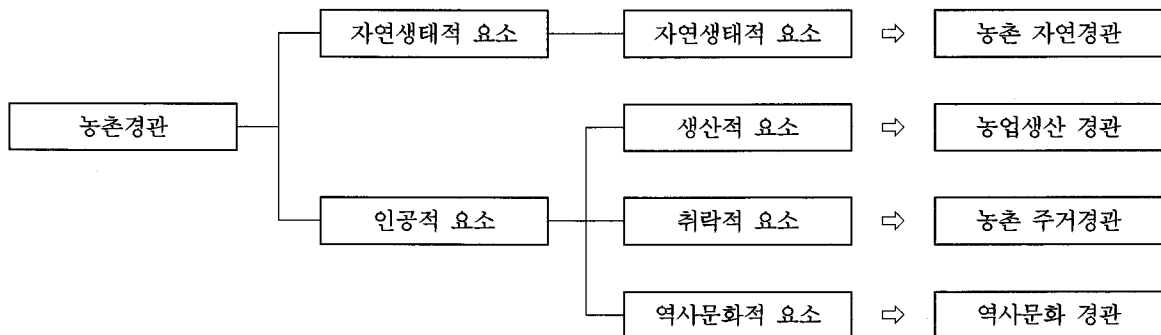


Figure 2 농촌경관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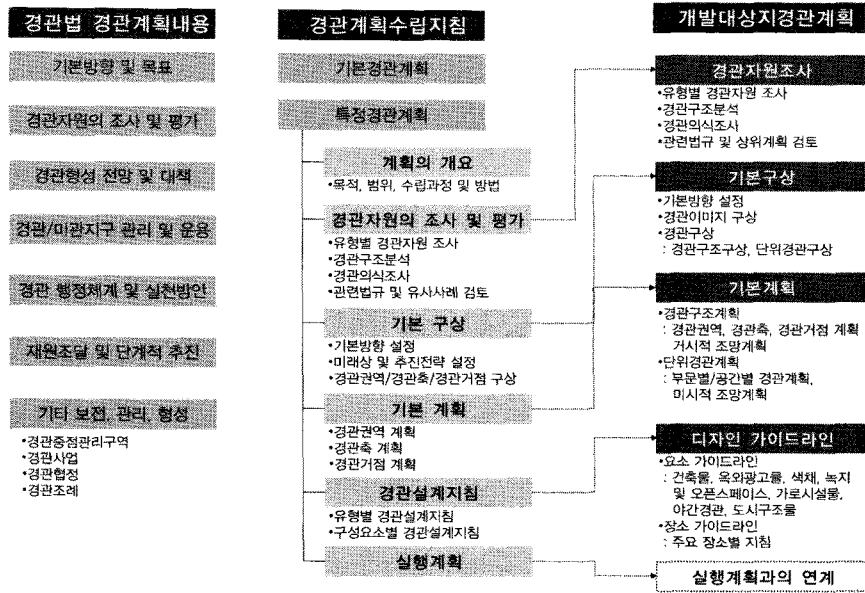


Figure 3 개발대상지 경관계획체계 도출 과정 (출처 : 대한주택공사, 2008, p24).

2. 농촌경관의 구성요소 및 유형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농촌경관의 배경이 되는 산림, 하천 등과 같은 '자연·생태적 요소'와 경작지, 취락지, 역사문화적 자원 등의 '인공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을 농촌 자연경관, 농업생산 경관, 농촌 주거경관, 역사문화 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농촌경관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구분은 농촌경관계획의 유형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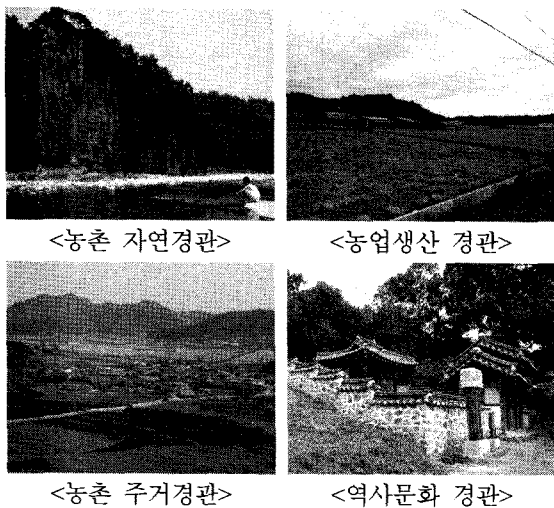


Figure 4 농촌경관 유형.

인공적 요소는 경작지, 취락지 등과 같은 생산적 요소, 농산어촌민의 주거를 위한 취락적 요소,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역사·문화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 요소가 우세한 경관

3. 경관계획기준 관련 연구 동향

경관법 제정 전후로 경관관련 국내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 졌다. 그 중 구체적으로 경관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경관계획의 체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대한주택공사(2006)는 경관계획의 내용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경관관련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건설교통부(2007)는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항목과 기준을 제시하여 경관계획수립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대한주택공사(2008)는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개발대상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계획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관자원조사,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계획을 진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관구조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단위경관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구분하여 각 수준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도시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나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경관계획의 틀로 현황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경관설계지침 등의 단계로 종합해 볼 수 있겠다.

IV. 경관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1. 경관법

경관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2007년 4월에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경관법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다양한 경관유형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촌경관에 대한 계획적 접근도 경관계획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경관계획의 유형을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특정경관계획은 특정 경관유형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한 경관계획도 가능하므로 농촌경관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관계획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므로 다른 경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농촌경관계획이 실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

2. 자연경관심의제도

2005년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전지역 주변과 보전지역 외 지역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지방환경청 산하의 자연경관심의 위원회 등에서 자연경관 현황, 경관축, 조화성, 경관변화 분석 및 예측, 저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대상지역 중 일정부분은 농촌경관과 중복되거나 농촌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촌마을 재정비사업

농촌경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은 현재까지

거의 없으나, 농촌마을 단위의 재정비 사업에는 상당한 부분이 농촌경관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사업들로 각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농촌마을 재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지원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의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촌 전통테마 마을 육성,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선정사업 등 매우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 재정비사업은 농촌경관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해당지역의 경관향상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업들은 경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사업으로 연계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및 유도에 의한 농촌경관관리제도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법률(이하 ‘삶의질법’)'에 의한 경관보전협약을 들 수 있다. 흔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로 불리는 제도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주민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5년부터 3년간 시범시행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안서 공모에 의해 마을을 선정한 후 경관향상을 목적으로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07년까지 시범사업 시행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조성을 통한 어메니티 증진 및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관직접지불제는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농촌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특정 작물의 시각적 효과에 의존하는 단기적인 경관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V.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안

1. 농촌경관계획의 체계

앞에서 살펴본 경관관련 제도와 정책들은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농촌경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접근이라기보다 개별적인 사업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경관형성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해 양호한 농촌경관의 보전, 창출은 중요한 요소이며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관법에 의한 특정경관계획으로 농촌경관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나, 농촌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질법의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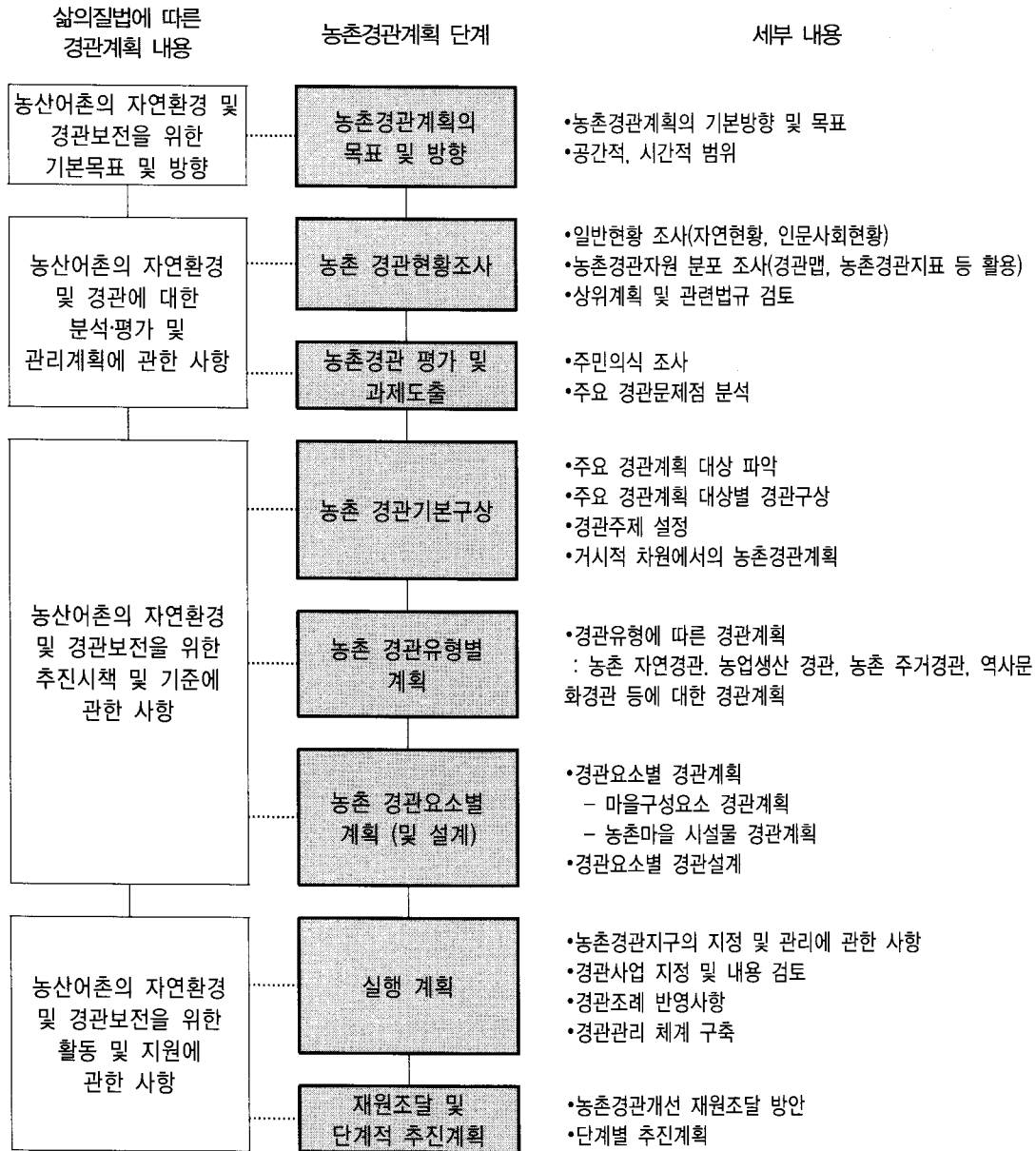


Figure 5 농촌경관계획의 체계 (삶의질법 기준).

한편,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의 개성과 다양성이 더욱 중시되며 농촌의 긍정적인 면의 재발견을 통해 농촌다움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

촌경관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삶의질법에서는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법 제5조), 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법 제38조), 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2조) 등의 조항에서 농촌경관

계획 관련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농촌경관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①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②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③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④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관계획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농촌경관계획 진행시 필요한 단계를 정리하면 Figure 4와 같다.

2. 농촌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목표 및 방향설정 단계에서는 농촌경관계획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로, 부문별 목표, 전략, 실천계획을 포함하고 각 계획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농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한다. 또한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연출, 관광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경관계획이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농촌경관은 농업에 의해 형성되는 경관 이외에 주거 공간, 수변, 산림 등 다양한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경관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역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 대상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계획의 실행을 고려한다면 농촌경관계획 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는 법정정리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농촌 경관현황조사

계획대상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일반현황과 농촌경관자원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일반현황은 지형과 지질, 기후, 물, 녹지, 동·식물상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와, 농촌의 구성요소가 되는 인구, 토지이용, 역사적 유산, 공동체 활동, 토지이용, 기반시설, 랜드마크 등 인문사회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농촌경관자원은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경관자원을 농촌 자연경관, 농업생산 경관, 농촌 주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자원조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경관자원은 긍정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축사, 공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마을 놀이, 공동체활동 등과 같은 비물리적인 요소도 포함하

도록 한다.

경관자원을 조사할 때에는 계획대상구역 내부 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경관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경관자원조사를 위한 주변지역은 대상지 경계로부터 약 2km 정도의 중경범위까지로 하되, 그 이상에 위치하더라도 중요한 경관자원은 조사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촌어메니티 자원 중 경관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농촌경관자원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경관맵이나 농촌경관지표 등과 같은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농촌경관 평가 및 과제도출

지역 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농촌경관에 대한 과제를 도출한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진행할 경우, 경관계획 전문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특성에 관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하고,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한다. 경관문제점 분석에 의하여 경관자원의 보존 및 관리방안 도출, 부정적 경관요소의 배치방안 등을 도출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경관계획목표에 부합하는 경관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5. 농촌경관 기본구상

농촌경관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주요 경관계획 대상을 파악하고 주요 경관계획 대상별 경관구상을 진행한다. 대상지역의 경관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농어촌경관계획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경관계획대상을 파악하고, 경관저해요소의 극복수단 및 효율적인 경관형성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경관유형과 권역별로 구분하고, 경관계획대상별 경관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주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농촌경관의 구조를 조망경관계획, 축경관계획, 랜드마크 계획, 경관담방로 계획 등의 수단으로 제시한다. 조망경관계획은 경관자원들에 대한 조망관리 조망장소 조성 등에 대한 구상획을 포함하며, 축경

관계획은 마을진입로, 하천 등과 같은 선형적인 요소에 대한 경관계획 구상이 해당된다. 또한 랜드마크계획 : 정자목, 마을표석 및 상징물 등의 랜드마크에 대한 계획 구상과 대상지에 산재되어 있는 경관자원을 연계하는 경관탐방로에 대한 계획구상을 포함한다.

6. 농촌경관 유형별 계획

농촌경관은 ①경작지 주변 산림 및 하천중심의 농촌 자연경관, ②농경지와 같이 생산과 관련된 농업생산 경관, ③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주거경관, ④농촌 마을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경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자연 경관은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녹지별로 지역의 개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자연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거나, 지역 식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마을숲, 비보숲, 방풍림, 목초지 등에 대해 보존 및 정비방안 등을 마련한다.

농업 생산경관은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양호한 경관의 보전을 위해 경작을 포기한 곳이나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농경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제시하거나 지역의 특산물 생산과 관련된 경관 특화방안 등을 제시한다.

농촌 주거경관은 마을회관, 저장 및 가공시설과 같은 공적 건축과 주택건축 등이 포함되며, 자연환경 및 농업 생산환경과 가장 효과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택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려와 담장, 지붕, 벽채 등의 외장색채, 재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폐가와 폐교 등과 같이 농촌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역사문화경관은 농촌마을 내에 위치하는 고택, 사당, 사찰, 향교, 서원 등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을 도모하며, 물레방아, 정자목, 솟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던 전통적 시설물 및 전통공간을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축제, 마을놀이, 농업공동체활동, 마을문화활동 등을 포함하는 경우 비물질적 자원으로 서, 무형 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7. 농촌 경관요소별 계획 및 설계

구체적인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 및 설계단계로 정자, 공공건물(마을회관 등), 담장 등 마을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단계이다. 경관계획 및 설계, 마을내부에

도입되는 안내시설, 가로시설물, 조형물 등 시설물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마을 전체에 대한 색채 계획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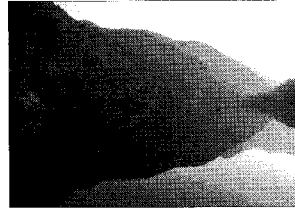


Figure 6 농촌자연경관 사례(저수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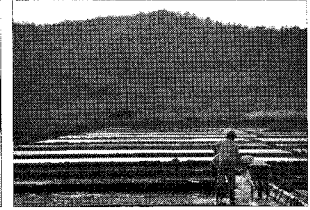


Figure 7 농촌생산경관 사례(엄전-신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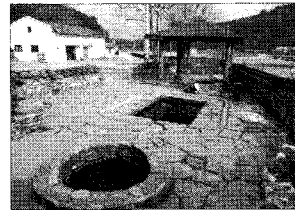


Figure 8 역사문화경관 사례 (우물터 활용).



Figure 9 경관요소 계획 사례 (버스정류장).

8. 실행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농촌경관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계획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농촌경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을 상의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준용하여 “농촌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관법에 포함된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제도를 활용한 실행계획 작성도 검토할 수 있다. 또는 기존의 사업위주의 농촌경관 정책의 수단과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계획의 실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농경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하거나, 운용이익 등을 활용하여 시민 참가를 촉진하고, 활동의 주체인 취락 조직의 지속적인 보전활동에 지원하는 등 경관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단계별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농촌경관계획에 대한 연구는 경관의 개념, 가치정립 등에 대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경관법이 제정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여 농촌에 대한 경관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경관계획의 체계를 제안하고, 각 단계별로 포함하여야 하는 계획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 수립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다만, 현재까지 농촌을 대상으로 한 경관계획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제 농촌경관계획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되는 농촌경관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계획기준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관유형별로 특징적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기준을 적용한 후에 진행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농촌경관계획기준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주1) 법적인 농산어촌지역의 정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농산어촌'을 의미하며 읍면 전지역과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참고문헌

1.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박소현, 2005,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심미적·경제적 가치

와 환경정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건설교통부, 2007, 경관계획 수립방향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
 3. 대한주택공사, 2006, 경관법 제정을 위한 연구.
 4. 대한주택공사, 2008, 개발대상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계획체계수립.
 5. 박동규, 김창길, 임승수, 송미령, 김배성, 박경철, 2004,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성주인, 2005, 농촌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송미령, 박경철, 2005,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농촌경제 28(3), 121-137.
 8. 송미령, 2006,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정책의 방향 한국경관협의회 공개세미나 주제발표.
 9. 엄대호, 심완보, 윤진옥, 이충선, 2004,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방안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10. 윤진옥, 홍찬선, 엄대호, 박윤희, 최분규, 정기호, 김묘정, 한상엽, 2005, 에메니티 증진을 위한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11. 이상문, 1991, 서울근교 목현리마을의 취락경관변화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이후 경관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황기원, 1989,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55-68.
 13.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 Methods and Results, vol 3, OECD.

* 접수일 : 2008년 10월 20일

■ 3인 익명 심사필